

운용소득 사용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4쪽 중 제1쪽)

공익법인등 명칭					사업연도				
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									
구분		⑤해당 사업연도	⑥1년 전 사업연도	⑦2년 전 사업연도	⑧3년 전 사업연도	⑨4년 전 사업연도	⑩5년간의 평균 (⑤~⑨의 평균)		
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									
②사용기준액									
(① × () / 100)									
③1년 내 사용실적									
④과부족액 (③ - ②)									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									
		가산액				차감액			
⑪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	⑫ 고유목적 사업준비금	⑬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	⑭ 기타	⑮ 소계 (⑫+⑬+⑭)	⑯ 출연재산 양도차익	⑰ 의제 배당액	⑱ 법인세 등	⑲ 이월 결손금	⑳ 소계 (⑯+⑰+⑱+⑲)
㉑차가감 소득 (⑪+⑮-⑳)		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					㉕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(㉑+㉒)		
		㉒ 기준미달사용액	㉓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		㉔소계 (㉒-㉓)				
3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									
가.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									
1) 수혜자(수혜단체)에게 지출 (단위: 원)									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단체명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수혜인원 (단체) 수	⑤지출액			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			
			명/개						
			명/개						
⑨ 합 계									
2) 자산 취득에 지출 (단위: 원)									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	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			
			개						
			개						
⑨ 합 계									
3) 운영경비에 지출 (단위: 원)									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	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			
			개						
			개						
⑨ 합 계									

나.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

1) 수혜자(수혜단체)에게 지출

(단위: 원)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단체명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수혜인원 (단체)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			명/개			
			명/개			
⑨ 합 계						

2) 자산 취득에 지출

(단위: 원)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			개			
			개			
⑨ 합 계						

3) 운영경비에 지출

(단위: 원)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			개			
			개			
⑨ 합 계						

작성방법

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

가. "⑥"란부터 "⑩"란까지: "⑤해당사업연도"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["④과부족액"란이 음수(-)인 경우를 말합니다]에만 적습니다.

나. "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"란: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"㉔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"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다. "②사용기준액"란: "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"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라. "③1년 내 사용실적"란: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.

1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

2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

3)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(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%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급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)

4)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"㉔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"의 금액에 "⑬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급에 산입된 금액"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

※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2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

가. "⑪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"란: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(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
나. "⑫고유목적사업준비금"란: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.

다. "⑭기타"란: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"⑪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"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(예: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)을 적습니다.

라. "⑯출연재산 양도차익"란: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.

마. "⑰의제배당액"란: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·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(합병·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)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.

바. "⑱법인세 등"란: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·주인세·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사. "⑲이월결손금"란: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
아. "㉔기준미달사용액"란: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"1.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"의 "④과부족액"란이 음수(-) ["⑤해당 사업연도"와 "⑩5년간의 평균"이 모두 음수(-)]인 경우 작성하며, 이 금액은 "⑤해당 사업연도" 과부족액(-)의 절대값과 "⑩5년간의 평균" 과부족액(-)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
자. "㉕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.

작성방법

3.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

가.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

"③1년 내 사용실적"의 "⑤해당 사업연도"란의 금액 중 이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1)부터 3)까지를 합한 금액에 대한 지출명세를 수혜자 지출, 자산취득 지출, 운영경비 지출로 나누어 작성합니다.

- 1) 수혜자(수혜단체)에게 지출하는 경우
- 가) "①(대표)지급처명(성명/단체명)"란: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(수혜단체)의 성명(수혜단체명)을 적고,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(수혜단체명)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나) "③지출목적"란: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.
- 예)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,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,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
- 다) "④수혜인원(단체) 수"란: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,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,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.
- 라) "⑤지출액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(수혜단체)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※ 작성예시1)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,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(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).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단체명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수혜인원 (단체)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홍길동 외	SSSSSS-SSSSSSS	미래인재개발 장학사업	101명	10,100,000		10,100,000
A복지시설	111-11-11111	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	1개		2,000,000	2,000,000

작성예시2)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(사례: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,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)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단체명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수혜인원 (단체)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어린이날 체험행사 300명(시간당 입장객 수)×8시간(행사시간)		어린이날 무료 직업 체험행사	2,400명	20,000,000	10,000,000	30,000,000
무료급식 제공 200인(1일) ×365(1년)		사회취약계층 무료급식	73,000명	150,000,000		150,000,000

- 2)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
- 가) "①(대표)지급처명(성명/상호)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,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(금융자산, 부동산, 미술품 등)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나) "③지출목적"란: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구분	자산 취득				
	금융자산*	부동산	미술품	기계장치	기타

*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(보통예금, 당좌예금,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)을 제외한 정기예금, 정기적금, 펀드상품,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, 회사채,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.

- 다) "④지급처 수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.
- 라) "⑤지출액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※ 작성예시) 보통예금 2,000만원, 1년 만기 정기예금 5,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, (주)국세 주식 500만원(500주)을 취득하고,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(1점당 90만원)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(토지 5억원, 건물 3억원)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품	⑧합계
A은행 정기예금		금융자산	1개	50,000,000		50,000,000
(주)국세 주식	111-11-11111	금융자산	1개	5,000,000		5,000,000
갑 갤러리	222-22-22222	미술품	50개	45,000,000		45,000,000
토지		부동산	1개	500,000,000		500,000,000
건물		부동산	1개	300,000,000		300,000,000

* 보통예금 2,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작성방법

3).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

- 가) "①(대표)지급처명(성명/상호)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나) "③지출목적"란: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구분	각종 경비 지출									
	인건비	임차료	회의비	모금비용	연구비	세금과공과	소모품비	지급수수료	수선비	기타

- 다) "④지급처 수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.
라) "⑤지출액"란: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※ 작성예시) 월 임대료 80만원(12개월 지급), 사무직원 갑, 을,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(12개월 지급), 기증받은 1,000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, 사무실 비품 등(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, 전화비 95만원, 휴대전화 70만원, 정기구독료 50만원, 수수료 60만원)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상호)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지출목적	④지급처 수	⑤지출액		
				⑥현금	⑦물 품	⑧합계
AA빌딩	111-11-11111	임대료	1개	9,600,000		9,600,000
직원 갑 외 2	*****-*****	인건비	3명	72,000,000		72,000,000
OO프로젝트		연구비	1개		10,000,000	10,000,000
사무실 운영비		소모품비	5개	3,650,000		3,650,000

나.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

"⑬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"란의 지출명세를 이 작성방법란 제3호가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.
